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구 미 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2025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 예정금액 : 57,152천원(시비 100%)

다. 출연필요성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에 해당.

라.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3. 참고사항

가. 첨부서류

- 1) 출연 동의요구서(붙임)
- 2) 출연기관 현황(붙임)
- 3) 출연 사업계획서(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57,152천원)

라. 합 의 : 예산재정과장

1)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세정과				
기관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연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57,152천원(시비 57,152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분	2024년도 출연금	2025년도 예산안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 100%)	59,447	57,152	-	감2,295
출연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부서의견(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2) 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26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24년 7월 현원기준)	○ 정원 88명 / 현원 71명 * 육아휴직 7명 포함							
	구 분	계	원 장	관 리 직	연 구 직	전 문 직	사 무 직 등	
	정 원	88명	1명	3명	56명	5명	23명	
	현 원	71명	1명	3명	40명	4명	23명	
총인원		97명					정원의 인원 26명 (파견공무원13, 위촉연구·전문원8, 행정원등5)	
※ 연구직(40명) : 연구위원직 20명, 연구원직 12명, 조사분석직 8명								
임 원 (2024년 7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종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이 사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이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이 사	김 진 만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사	이 상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이 사	김 종 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이 사	최 명 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이 사	서 동 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이 사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감 사	이 화 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감 사	김 경 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7,411 (‘11~’24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25,335	
	예산액	12,805	18,069	17,379		부채	1,587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3,74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7,064				15,850		1,593	

3)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해당없음
주관부서	세정과		출연	57,152천원(시비)

①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②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3년: 17,379백만원) 중 12,383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③ 산출기초

- 출연액 : 57,152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출연금	280,472	67,095	58,177	45,986	49,767	59,447

④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⑤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매년 전전년도('23)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만분의1.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세정과 도세팀 조수연 (☎ 480-6858)

소 관 부 서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한 승 우
	팀 장	문 영 후
	담 당 자	조 수 연 (480-6858)